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79

발의연월일: 2022. 3. 28.

찬 성 자:서일준・김용판・권명호

김미애 · 김승수 · 이명수

이종성 • 추경호 • 양금희

하영제 • 박완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매매·전세가 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특히 통계청의 '인구주 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월세가구 비율은 2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임.

이에 따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

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100분의 12" 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8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	
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	
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	
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	
<u>의 10</u>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u>100분의 12</u>
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	
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	
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u>100분의</u>
<u>12</u>]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
이 <u>750만원</u>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u>100분의 15</u>
<u>850</u>
만원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